
2020년 현지화 지원사업 비관세장벽 해소 자문보고

주 류

일본 수출 시 인증서 필요여부, 성분 적정성 여부 등 보고서

2020.04

주류 대일수출 조건 등 조사보고서

1. 자문신청내역

- 제품명 : 1. 약주 2. 소주 3. 청주
- 자문 조사 의뢰 내용
 - 대일 수출시 인증서 필요 여부
 - 일본 인터넷 판매 조건 등
 - 해당 상품에 대한 성분 적정성 여부 검토

2. 조사결과

1) 대일 수출시 인증서 필요 여부

- 주류의 일본 수입시 별도의 인증서는 필요 없고 누구든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식품위생법, 주세법, 주류업 조합법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 식품위생법상 주의사항은 보존료, 착색료,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과거 위반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시클람산(감미료) 등 지정외 첨가물 포함 여부
 - 술빈산, 술빈산 칼륨 등의 보존료를 초과 사용 여부
 - 산화방지제인 이산화황의 초과 사용 여부 등

<각 성분별 기준치 사이트>

<https://www.ffcr.or.jp/webupload/e3984852a08b38bffa3d166a8176173c3916dd2.pdf>

- 주류수입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으나, 일본 내 수입업체가 도매 또는 소매를 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교부하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일본 인터넷 판매 조건 등

- 인터넷 판매 사이트별 등록 제조건은 다양하나, 큐텐 사이트 일반회원 등록의 경우로 예를 들어 설명 드립니다.
- 큐텐의 일반 회원으로 가입시 초기비용은 특별히 없으며, 서류 확인 후 회원 등록이 완료되며, 이후 해당 상품에 대한 등록 및 판매 배송은 각 업체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고 대금회수는 큐텐이 대행합니다. 대금은 상품 도착 확인 후 최단 5일에 업체 지정 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 판매 시, 별도 판매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주류의 경우 판매액의 10% 금액입니다.
- 일본 큐텐 사이트에는 많은 주류 판매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한국 직구 사이트의 경우 주류 품목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아마도 주류 면허 관계 이유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성분별 일본 식품위생법 적정성 여부 <종합판단: 문제없음>

□ 효모 관련

- 영문명 (Nuruk(malted wheat))에서 맥아를 사용한 누룩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용 가능한 원료로 판단되나, 원재료에 대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표기되지 않은 2차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제효소제

- 영문명 (Purified Enzyme) 에 의한 효소일 경우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 식품표시기준에 의한 효소는 첨가물의 일괄명칭의 하나로 아스파라기나아제 및 참조 첨가물2-1의 용도란에 효소라고 기재되어진 첨가물의 물질명인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 또한, 사용된 효소가 하기 효소 정의에 해당하는지도 더불어 확인해 주십시오.
(정의)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갖는 촉매작용을 목적으로 사용된 생활세포에 의해 생산된 효소류. 최종식품에서도 불활성화 되지 않고 효과를 가지는 첨가제 및 그 제제

3. 한국산 전통주 수입에 관한 일반 사례

- 【질의사례】 한국산 전통주 수입은 가능한가? 제한사항 및 선례는?
 - 과거 사례를 포함하여 한국산 전통주 수입은 가능합니다.
 - 금년에도 한국청주로 수출 준비중인 업체가 있어 성분적정성 및 수입자표기, 검역 통과요건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정식수출이 가능한 품목으로 사료됩니다.

4. 통관 시 유의점 안내

- 가공식품을 일본에 수입할 경우 반드시 첫 1회에 한해 식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 후에 통관이 가능하므로 대량으로 수출하기 전에 사전에 소량의 샘플 통관을 실시함으로써 일본 통관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본 수출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당 제품의 검사 실시 유무 및 검사 항목등에 대한 확인은 일본수출 선적일정이 결정된 후 도착항 관할 검역소에 「사전심사제도」(화물도착 7일전부터 신청 가능함)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함.

5. 국내 검사기관 이용안내

- 한·일간에 기준치가 상이함으로 일본 내 기준치에 위반되지 않는지 사전에 국내 전문검사기관에서 일본 수출용 기준에 맞추어 각종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함.
- 일본 수출 전 일본 검역소가 인증한 국내 검사기관에서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일본 통관시 해당 시험성적서로 갈음하여 별도 검사없이 통관이 가능한 제도임.

6. 향후 지원사업 안내

- 향후 라벨링 제작이 필요하신 경우 대일 수출 제품에 대한 표기사항(라벨링)을 전문기관이 작성 자문해 드립니다. 이 경우 성분표, 공정표를 첨부하여 수입업체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현지 수입업체가 결정되시면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현지화 사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로 식품검사시 비용 지원, 패키지 포장디자인, 현지 마케팅 조사 등의 지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류 통신판매 조건 등 조사 보고서

1. 자문신청내역

- 제품명 : 1. 약주 2. 소주 3. 청주
- 자문 조사 의뢰 내용
 - 일본 인터넷 통신판매 조건 등

2. 조사결과

1) 주류 판매에 필요한 면허

- 판매를 목적으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주류 판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통신판매와 관련해서는 「통신판매 주류 소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① 일반 주류 소매업 면허

- 통신판매에 의한 방법 이외의 소매를 하는 경우에 필요함.
- 사무실을 마련, 매장 및 음식점, 호텔 등에서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필요함.

② 통신판매 주류 소매업 면허

- 수입주류의 인터넷 판매 및 카탈로그 판매가 가능함.
- 개인소비자 등예의 판매는 가능하나, 가게 등에서의 매장 판매는 불가함.

③ 수입 주류 도매 면허

- 직접 수입한 술을 주류 판매업체 및 주류 제조업자에게 도매가 가능함.
- 취급주류에 따라 각각 전체주류 도매 면허, 맥주 도매 면허, 양주 도매 면허 등으로 분류된 면허가 필요함.
-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가 불가하며 다른 회사가 수입한 주류를 도매하는 경우, 각각의 취급주류에 따른 도매 면허가 필요함.

2) 주류 판매 면허의 취득에 있어서

- 주류 판매 면허를 취득하려면 일본 세무서에 판매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조: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내 신청서>
<https://www.nta.go.jp/taxes/sake/menkyo/tebiki/mokuji2.htm>
- 세무서는 제출된 신청서에 따라 「인적 사항」, 「장소적 요건」, 「경영 기초 요구 사항」 등을 심사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허가 합니다.
 - <참조: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a.go.jp/taxes/sake/qa/03b/02.htm>
 - (인적 사항) 세금 체납이나 주세법의 면허, 알코올 사업법의 허가가 취소된 적이 없는지 등 법령준수에 관계되는 것의 심사.
 - (장소적 요건) 단속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판매장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등의 심사.
 - (경영 기초 요구 사항) 면허 신청자가 파산자로 복권을 얻고 있지 않은지, 신청 전 1년 이내에 은행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지 등 경영에 관련된 심사.
- 일반적으로 신청에서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 정도입니다.
- 단, 「수입주류 도매 면허」에 대해서는 법인의 경우 최근 결산서가 채무 초과 되지 않고, 지난 3년간의 결산서가 모두 적자이면 안되는 등 「일반주류 소매 면허」에 비해 엄격한 편이며, 해외 공급업체와 국내 판매처의 거래 승낙서 등이 필요합니다. 거래의 상대방이 적절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사전 확인도 필요합니다.
- 주류 판매 면허 신청은 신청서뿐만 아니라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납세증명서 등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수입 절차에 대해

- 주류 판매 면허를 취득 후, 일본에 제품 도착 시 먼저 세관 통과가 필요함.
- 필요 사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송장(화물의 품명, 수량 및 가격 등), 패키징 리스트(포장명세서), 선하증권(B/L), 보험료 명세서, 요금 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함.

-
- 수입 주류가 일본 식품위생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검역소에서 심사받아야 함.
수출국에서 발행한 성분표, 제조공정도, 농약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검역소에 제출해야 함.

- 수입하고자 하는 장소의 관할 검역소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참조:일본 세관 주류수입 관련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kojin/3105_jr.htm

- 주류표시 의무사항에 따라 용기에 주류 품목, 알코올 농도 등의 사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참조:일본 세관 주류 표시방법 관련 자료>

https://www.customs.go.jp/tokyo/content/sakerui_3.pdf

끝